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439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사업비 및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책사업비인 예치금을 당초 대비 20% 초과 감액하여,

나. 비용자성 사업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31,001백만원, 예치금을 7,822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 지 출 부 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39,824	41,377	38,823	△1,001	△2.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비용자성 사업비	27,143	31,001	31,001	3,858	14.2%
	예치금	12,681	10,376	7,822	△4,859	△38.3%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15회 정례회)대비 정책사업비(재무활동-예치금) 20% 초과(38.3%) 변경

<1차 변경>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증액(당초 6,463백만원→8,561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증액(당초 768백만원→798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액
(당초 10,036백만원→10,536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주민복지증진사업 증액
(당초 9,876백만원→11,107백만원)
-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10,376백만원)

<2차 변경>

- 정책사업비인 예치금 감액(당초 12,681백만원→7,822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 복혜진(☎ 2133-3682)